



“CM, 안전을 품고 혁신을 더하다”

한 국 CM 협 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CM담당본부장

제 목 ConsMa 2026 ‘세계CM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ConsMa 2026 ‘세계CM의 날’ 기념행사 때 CM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니 적격자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추천대상 : CM발전에 기여한 당해 분야 수공기간 5년 이상인 자
2. 추천기간 : 2026. 3. 4.(수) ~ 2026. 3. 20.(금)
※ 기 접수하신 분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포상규모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포상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4. 추천제한
 -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나.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바.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5. 추천방법 : 이메일(cm@cmak.or.kr) 접수
6. 최종 선정방법 : 우리 협회 추천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

7. 제출서류

가. 추천공문 1부

나.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공적조서 1부

마.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1부

바. 공적 증빙자료 1부(제출가능자에 한함)

※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cmak.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입력한 파일과 도장 날인 한 추천공문 등 제출서류일체를
스캔하여 E-mail(cm@cmak.or.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한국CM협회 운영지원본부 천금자 상무 ☎(02)585-7092

붙임 : 2026년도 세계CM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1부. 끝.

한 국 C M 협 회 장



대리 이 도 영

상무 천 금 자

시행 운영지원본부 - 22 (2026. 3. 4.)

066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전화 070-7510-1226

전송 02-585-2689

<http://www.cmak.or.kr>
dy250@cmak.or.kr

**「제16회 세계CM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모**

2026. 3.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제16회 세계CM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모

「제16회 세계CM의 날(6.1.)」을 맞이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 포상을 수여코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상분야 및 규모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
- * '25년 포상 내역 :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6명

2. 추천후보 자격

-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 정직, 성실한 자로 건설사업관리(CM)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수공기간
 - 5년 이상
- 정부 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 제외자
 -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등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3. 추천 접수기한 : '26. 3. 20.(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한국CM협회 운영지원본부 (☎02-585-7092)

5. 제출서류

가. 추천공문(1부)

나.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1부) : <붙임서식 1>

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서식 2>

라. 공적조서(1부) : <붙임서식 3>

마.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1부

바. 공적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연구개발실적, 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심사기준 “별첨” 참조

<붙임서식 1>

「세계CM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주소*		e-mail	
	전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현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표창 규정, 제10조 2, 「정부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표창 규정, 제20조 2,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령」 제33조 시행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령」 제33조 시행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붙임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 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세계CM의 날 유공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위원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u>피추천인의 공적</u>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u>작성하는 것을 원칙</u>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27) 공 적 사 항

심사기준

□ 평가기준 * 정부포상 심사지표 활용

가. 공통지표(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도	10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0 1 2 3 4 5 6 7 8 9 10
고 객 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0 1 2 3 4 5 6 7 8 9 10
창조적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40	

나. 특성지표(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평가	○ 건설기술자 근속기간 및 CM프로젝트 참여 경력 등	15	0 3 6 9 12 15
건설산업발전 기여도	○ CM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	25	5 10 15 20 25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 최근 3년간 고용인원 및 비율, CM교육훈련 실적 등	10	0 1 2 3 4 5 6 7 8 9 10
경영혁신 및 사회공헌	○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 참여도	10	0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60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후보자 추천 서식

1. 추천공문 (도장 날인)
2. 공적조서 (도장 날인)
3. 동 의 서 (도장 날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9)직 위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20 년 월 일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추천훈격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성명

(서명)